

장애학생지원 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9.05.22., 개정 2020.04.28., 개정 2024.03.01., 개정 2025.05.08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장애학생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
- ②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
- ③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
- ④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⑤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
- ⑥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
- ⑦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- ⑧ 기타 장애학생 관련 규정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장은 장애지원센터장으로 한다.<개정 2024.03.01.>,<개정 2025.05.08.>
- ② 학생처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 2020.04.28.><개정 2025.05.08.>

제4조 (임기)

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하며,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24.03.01.>,<개정 2025.05.08.>
-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생처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20.04.28.><개정 2025.05.08.>

제6조 (회의 및 의사의결)

-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소위원회)

-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학생팀 담당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20.04.28.>

제9조 (회의록작성)

- ① 회의록은 위원장의 지시로 간사가 작성한다.
- ②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.

부 칙(2019.05.22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4.28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3.01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(2025.05.08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